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0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차규근ㆍ김준형ㆍ이해민

조 국 · 서왕진 · 황운하

김재원 · 정춘생 · 신장식

강경숙 • 박은정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역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조 원 부족한 상황 임. 이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 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 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한다)"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 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대한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감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 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	
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	
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u>정</u>	
<u>하는 비율</u> 이하가 되도록 <u>노력</u>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
<u>하여야</u> 한다.	<u>도"라 한다)</u> <u>하여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
	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61
	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
	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	
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 중대한 세입 부족이 발생한
	<u>경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